

의안번호	제 708 호
의 결 연 월 일	2021년 4월 일 (제390회)

충청북도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연월일	2021년 4월 21일

충청북도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의안 번호	708
----------	-----

제안연월일 : 2021년 4월 21일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사유

- 충청북도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등과 관련한 규칙을 제정하여 집행 및 공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정목적(안 제1조)
 - 충청북도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을 확보
- 업무추진비 사용제한(안 제4조)
 - 개인적 용도,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장소
 - 친목회·동우회·시민단체 등에 내는 회비
 -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경우 등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안 제6조)
 - 분기 1회 이상 홈페이지 공개
(사용자, 사용일시, 사용장소, 집행목적, 인원수, 금액 등)
- 교육 및 점검, 부당사용자 제재(안 제8~9조)
 - 연1회 이상 교육 실시 및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 위반한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및 환수 등 조치 가능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발취 : 지방회계법 시행령

6.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충청북도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충청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 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7.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서 업무추진비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경우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업무추진비 사용자, 사용일시, 사용장소,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 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충청북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충청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충청북도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서식

사용자	일시	장소	집행목적	인원	금액	결제방법	비목

관계 법령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회계 처리 등에 관한 사항)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 회계 처리의 통일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고금 관리법」 등 국가의 회계 관련 법령 등을 참고하여 회계 처리에 관한 세부 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이 영과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